

# 주요 선진국의 영업비밀 보호제도(Ⅲ)



황 의 창  
특허청 상표심사과장

## -목 차-

1. 머리말
  1. 영업비밀의 개념
  2. 영업비밀 침해 동향
  3. 영업비밀 관리실태
2. 영업비밀의 국제 규범
3. 주요 선진국의 영업비밀 보호 제도
  1. 한 국
  2. 미 국
  3. 독 일
  4. 일 본
  5. 영 국
  6. 스위스
  7. 프랑스
4. 맷 음 말

## 3. 독일

### 가. 배경

독일에서는 영업비밀 보호제도의 효시인 영·미의 영향을 받아 1909년 제정한 부정경쟁방지법과 불법행위법(민법 제823조, 제826조)에 의해 영업비밀이 보호되어 왔다.

부정경쟁방지법에는 영업비밀의 정의나 요건에 관한 규정이 없고 판례에 의해 그 개념이 정립되었다.

부정경쟁방지법에는 경쟁의 목적으로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보고 형사적 제재와 민사적 구제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형벌 규정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특히, 공무원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헌법(제34조) 및 민법(제839조)에 의해 회사의 임원에 대해서는 회사법에 의해, 재임기간은 물론 퇴임후에도 일정 기간 영업비밀 유지의 의무를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

독일은 제정법상으로 볼 때 민사적 구제보다 형사벌에 의한 규제가 중시되고 있으나 판례상으로 형사벌의 적용범위보다 민사적 구제 쪽이 넓다.

### 나. 영업비밀의 정의

독일의 부정경쟁방지법에는 영

업비밀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고 판례법에서 정의를 내리고 있는 바 판례법상 영업비밀이란 사업활동에 관한 정보로서 제한된 자에게만 알려져 있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아야 하며 사업주의 비밀보호의 의사가 명확해야 하고 그 정보를 비밀로 함으로써 사업주에게 정당한 이익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대상으로는 생산기술에 관한 정보 뿐만 아니라 판매 등 영업활동에 관한 정보와 기타 영업상의 정보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고객의 명부, 구입처, 가격표, 원가계산, 생산방법, 방법, 설계도면, 제조데이터, 제조공정 등을 들 수 있다.

### 다. 영업비밀침해행위의 유형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 등의 대상이 되는 침해 행위 유형을 4가지로 한정 열거하고 있고 이외의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민법, 형

법, 상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해 보호되고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 유형을 보면 첫째, 종업원 중 고용관계에 의해 서만 알 수 있는 영업비밀을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또는 사업주에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공개하는 행위 (부정경쟁방지법 제17조 제1항)

둘째, 기술적 수단의 이용, 비밀이 화제된 복제물의 작성 및 탈취 등에 의해 권한없이 영업비밀을 입수하는 행위 (동조 제2항)

셋째,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가) 또는 (나)의 행위에 의해 입수한 영업비밀을 권한없이 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 (동조 제2항)

넷째, 경쟁의 목적으로 권한없이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 등 (동법 제1조)의 유형으로 특정하고 있다.

라.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구제  
독일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규제는 민사적 규제보다는 형사처벌에 더 비중을 두고 운용하고 있는 것이 다른 나라에 비해 특징인 바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기로 한다.

#### (1) 형사적 구제

##### (가) 부정경쟁방지법

①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나 또는 사업자에게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 ② 산업스파이 등 제3자가 기술

적 수단의 이용, 복제, 절취 등의 방법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단순한 탐지행위 불가별)

③ ① 또는 ②에 의해 취득한 영업비밀을 권한없이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④ 경쟁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⑤ 침해자가 공개시 그 영업비밀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았거나 또는 당해 영업비밀을 자기 스스로 외국에서 사용할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며

⑥ 업무상의 거래에서 위탁된 원형이나 기술적 성질의 지침서, 특히 도면, 모형, 형, 형지나 처방 등을 경쟁의 목적으로 또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 권한없이 사용, 공개하는 행위, 경쟁의 목적 또는 사리를 위해 제3자를 유혹하여 침해 행위를 교사하거나 또는 이를 받아들인자 (동법 제20조 (1)) 및 경쟁의 목적 또는 사리를 위해 침해 행위를 방조하거나 또는 요구에 의해 침해 행위를 할 용의가 있는 것을 확실히 한자 (동법 제20조 (2))에 대해서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 (나) 형법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교사법, 종범(제26조, 제27조) 데이터 탐지죄 (제202조) 및 타인의 비밀로 되어 있는 데이터 (전자적 방법으

로 저장되고 전달되는 것)를 입수한자는 형법에 의해 처벌된다.

이상의 부정경쟁방지법 및 형법상의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논하는 친고죄로 하고 있다.

#### (2) 민사적 구제

##### (가) 부정경쟁방지법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영업상의 거래에서 경쟁의 목적으로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금지청구 (동법 제1조), 침해상태의 제거청구 (동법 제1조 적용판례)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 (동법 제17조, 제18조, 제1조단, 제20조 불인정) 할 수 있다.

판례는 부정경쟁방지법상의 형사 처벌대상이 아닌 침해행위에 대해서도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로 취급하여 손해배상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예를 들면 퇴직후 종업원의 행위로서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가의 여부는 사용자가 얻은 이익과 퇴직자의 이익과의 비교 등에 의해 이루어진다.

##### (나) 민법

민법 제823조 (손해배상의무)에서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생명, 신체, 건강, 자유, 재산, 기타의 관리에 대하여 불법적으로 해를 끼친 자는 그로인한 위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타인을 보호할 목적을 가진 법률을 위반한 자도 동일한 의무를 진다.

만일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이러한 위반 행위가 과실이 없이도 일

어날 수 있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의무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민법 제826조 (공고정책에 반하는 고의적인 손해에서는 선량한 관행에 반하는 방법으로 타인에게 고의적으로 손해를 입힌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영업비밀침해가 경업의 목적인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제17조 제18조의 위반행위가 되어 손해배상을 하게되나 경업의 목적이 아닌 위반행위이거나 또는 부정경쟁방지법의 규정에 의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민법 제8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 (3) 기타 특별법에 의한 구제

이상과 같은 부정경쟁방지법, 민법, 형법에 의한 구제 외에 노동법, 종업원 발명법, 경쟁제한법, 판례법 등에 의해서도 보호되고 있다.

이상의 금지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그러한 행위 또는 의무를 안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하지 않거나 행위시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시효에 의해 소멸한다.

## 4. 일본

### 가. 배경

일본도 독일과 같이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부정경쟁 행위로 보고

부정경쟁방지법 속에 영업비밀 보호규정을 두고 있다.

이 부정경쟁방지법은 1939년 처음 개정된 후 5차례의 개정을 거쳐 최근 1990년에 영업비밀보호를 위해 다시 개정되었다. (1990. 6. 29 공포, 1991. 6. 15 시행) 개정 전 일본의 영업비밀은 주로 민법, 상법, 형법 등의 일반법에 의해 보호되어 왔다.

즉 회사의 임원, 종업원, 기술협정당사자 등 계약관계에 있는자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민법(계약법), 상법에 의해 계약위반 행위의 금지 및 손해배상이 가능하고 제3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구제로서는 민법 제709조(불법행위법)에 의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금지청구에 해서는 명시적 규정이 없고 판례도 지금까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금지 및 폐기, 제거 청구를 인정하고 있는것이 특징이다.

이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영업비밀이란 비밀로서 관리되고 있는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사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로서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영업비밀 침해 행위의 유형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영업비밀에 대한 보호수단의 대상이 되

는 침해 행위를 6가지의 유형으로 한정 열거하고 이외의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민법상의 불법행위법이나 계약법 또는 형법, 상법 등 타 법에 의해서 보호되고 있다.

첫째, 절취, 사기, 강박 기타 부정한 수단에 의해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이하 부정취득행위라 한다)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둘째, 그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 행위가 개입된 것을 알거나 알지못한 것에 대하여 중대한 과실로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셋째,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 행위가 개입된 것을 알고 또는 알지못한 것에 대하여 중대한 과실로서 당해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넷째, 보유자로 부터 얻은 영업비밀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보유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다섯째, 그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공개행위(전호의 규정에 의한 공개행위 및 비밀을 지킬 법률상의 의무에 위반하여 공개하는 행위)라는 것 또는 부정공개행위가 개입된 것을 알고 또는 알지 못한 것에 대하여 중대한 과실로서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

여섯째,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공개행위라는 것 또는 부정공개행위가 개입되었다는 것을 알고 또는 알지 못한 것에 대하여 중대한 과실로서 당해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 다.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구제

##### (가) 민사적 구제

###### ① 사전적 구제

###### ○ 금지 또는 예방 청구권

영업비밀 보유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해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은 영업비밀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나 영업상의 이익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자(예: 대리점)이며, 여기에서 「보유」란 영업비밀을 직접 만들거나 매매계약, 라이선스 계약 등 법적으로 유효한 거래행위의 결과로 취득한 경우 또는 고용계약이나 위임계약을 기초로 기업에서 공개한 정보를 종업원 등이 지득한 경우 등 정확한 권원에 의해 취득,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사업자」란 영리사업(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등)에 국한하지 않고 공익법인, 특수법인, 협동조합, 지방공공단체 등 비영리사업 주체도 사업자라 할 것이다.

금지·예방 등을 할 수 있는 침해행위는 전술한 침해행위유형 6 가지에 한하며 금지청구의 대상은 영업비밀이 생산기술의 경우는 그 제품의 제조 및 판매의 금지가 될 것이고 고객명부의 경우는 고객명부의 발송금지, 건축기술의 경우는 당해 건축공사의 금지 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금지청구의 요건으로는 현실적으로 반드시 영업상의 손실이 발생될 필요는 없고 현상태가 지속되면 영업비밀의 침해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면 충분하다.

###### ○ 폐기·제거 청구권

영업비밀 보유자는 영업비밀에 관한 부정행위를 조성한 물(영업비밀을 화체한 매체를 포함함), 영업비밀에 관한 부정행위에 의해 생겨난 물 또는 영업비밀에 관한 부정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폐기, 기타의 영업비밀에 관한 부정행위의 정지 또는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바 그 청구의 대상을 예시해 보면 영업비밀이 화체된 컴퓨터 파일, 고객명부, 영업비밀에 의해 만들어진 제품 및 그 제품을 만든 기계 및 시설 등을 들 수 있다.

###### ② 사후적 구제

###### ○ 손해배상 청구권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전술: 6가지 유형)한 자는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받는 자에 대

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 ○ 신용회복 청구권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하여 영업상의 신용이 손상된 피해자는 법원에 손해배상에 대신하여 혹은 손해배상과 함께 영업상의 신용을 회복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침해자에게 명령하도록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예를들면 침해한 영업비밀로 만든 물건이 원보유자가 만든 물건보다 훨씬 품질이 조악하여 수요자 모두가 당해물건이 조악한 것으로 믿는 경우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신용회복 조치로서는 신문, 업계잡지등에 사과광고를 게재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나) 형사적 구제

부정경쟁방지법 제5조는 부정경쟁행위를 한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벌칙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형법상의 업무상 횡령죄, 배임죄, 절도죄, 장물취득 및 매매 등으로 고소하여 처벌을 요구할 수 있다.

## 5. 영국

영국의 영업비밀보호제도는 19세기 초기에 공정한 관습에 반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리와 영업비밀의 부정사용 및 부정공개

등 부정유출행위를 금지시키기 위한 판례가 나오면서 다수의 판례가 축적되면서 계약법, 불법행위법, 신뢰위반 등의 법원리에 근거한 판례법을 통하여 보호되고 있다.

영업비밀에 대한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판례법상 영업비밀이 되기 위해서는 대체로 공개되어있지 않은 비밀정보로서, 당해정보가 공개되는 경우 정보의 보유자가 손해를 입거나 경쟁자가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정보가 영업비밀로 인정되고 있다.

부정경쟁행위라고 보는 침해행위 유형으로 이사와 회사, 사용자와 피용자, 대리인과 본인 등의 신뢰관계가 인정되는 당사자가 그 업무에 위반하여 당해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비밀유지 의무를 가진자가 그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알면서 또는 과실로 알지 못하고 당해 정보를 취득하거나 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 등을 들수 있다.

이들 행위에 대해서는 금지청구권 외에 손해 배상청구권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특히 영업비밀이 문서 등에 화체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절취하는 행위에 대하여 형사상의 절도죄의 적용이 가능하다.

## 6. 스위스

스위스는 기만 또는 기타의 대

법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경제상의 경쟁을 도용하는 것을 부정경쟁행위 즉 영업비밀의 침해 행위로 보고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민사적, 형사적 보호수단을 두고 있다. 이 법에서 부정경쟁행위라고 보는 침해행위의 유형으로서 ① 제3자가 사용하는 근로자, 수임자 기타 보조자의 직무상 또는 업무상의 사무에 관한 의무위반행위에 의해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해 이익을 얻을 의도로서 또는 이에 적합한 부당한 편익을 이들에게 제공하는 행위 ② 근로자, 수임자 기타 보조자를 유혹하여 그의 사용자 또는 위임자의 제조상의 비밀 또는 사업상의 비밀을 누설 또는 탐지 시키는 행위 ③ 스스로 탐지하거나 다른 방법에 의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알게된 제조상 비밀 또는 사업상 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들수 있다.

이들 행위로 인하여 고객의 신용 또는 직무상의 신망, 사업 기타 경제상의 이익에 해를 입거나 위태롭게 된자는 ① 그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대한 위법의 확인 ② 영업비밀 침해 행위의 금지 ③ 영업비밀 침해상태의 제거, 불진실 또는 기만적인 표시행위의 정정, 손해배상 및 위자료 등과 같은 청구를 할 수 있고 이 청구권의 행사는 제소권자가 그 행위의 발생을 안 때로부터 1년간, 그 행위가 발생한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을 때

에는 시효에 의해서 소멸된다.

또 고의로 제3자가 사용하는 근로자, 수임자 기타 보조자의 직무상 또는 업무상의 사무에 관한 의무위반 행위로서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해 부당한 편익을 제공하거나 근로자, 수임자 기타 보조자를 유혹하여 그 사용자 또는 위임자의 제조상 비밀을 누설 또는 탐지 시키는 행위 및 스스로 탐지 또는 기티의 방법으로 신의 성실에 반하여 얻은 제조상의 비밀 또는 사업상의 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고소에 의해 구속 또는 벌금 등의 형사벌에 처한다.

## 7. 프랑스

프랑스에서는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전의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법제는 없고 민법, 상법, 형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다.

특히, 지난 20년간 영업비밀을 포함한 부정경쟁 행위에 관한 판례법이 발달해 오면서 영업비밀 보호 노력을 하고 있고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업정보의 침해에 대해서는 금지청구권 및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회사의 종업원, 임원에 의한 업무상 비밀의 누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할수 있도록 형법에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별처 규정을 특별히 두고 있다.  
(형법 제418조)

즉, 외국인이나 프랑스 거주 외국인에게 제조비밀을 누설하는 경우는 2~5년 징역 또는 별금 1,800~120,000 프랑의 손해배상에 처하고 (형법 제418조) 아울러 5~10년의 공민권 제한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42조) 영업비밀을 내국인에게 누설하는 경우는 3개월~2년의 징역 또는 별금 500~15,000 프랑의 손해배상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제3자의 영업비밀 등에 관한 부정경쟁행위에 대해서는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의해 보호가 되어오고 있다. (민법 제1382조)

#### 4. 맷는말

이상과 같이 주요국의 영업비밀 보호제도를 개략적으로 살펴보았으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영업비밀의 정의를 정확히 이해함은 물론 침해행위의 구성요건과 구제 제도를 충분히 파악하여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영업비밀 보호법규와 관련된 법제는 물론 사법제도와 관행도 이해하여 소기의 목적달성을 물론이고 영업비밀의 국제분쟁에도 적절히 대응해 나가는 일 또한 매우 중요한 일이다.

예를들면, 최근 한·미 기업간

에 산업용 다이어몬드 제조기술 침해문제를 둘러싸고 미국법원에서 공방을 벌였던 일진과 GE사간의 5년여에 걸친 법정분쟁은 일진이 GE사의 특수금형기술을 포함한 산업용 다이어몬드 생산기술을 도입키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1994년 8월 10일 상공자원부에 기술도입 신고서를 제출하고 12일 상공자원부가 이를 수리할 방침임을 밝힘으로써 일단락 됐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의 미국법원의 판결은 미국에서 뿐만아니라 독일, 일본 등 선진국에서까지 좋은 사례로 소개되고 있고 우리에게도 많은 교훈을 준 대표적인 사례가 되고있어 이를 중심으로 검토해 보는것도 영업비밀에 관한 법적제도의 운용능력이나 분쟁해결의 능력 등을 제고하는데 매우 유익하다고 본다.

1984년 GE사에서 퇴직한 「중국계 과학자 성첸민」씨가 1988년에 이 회사의 산업용 다이어몬드 제조기술에 관한 영업비밀을 빼내어 한국의 일진에 팔아 넘겼고 일진은 이 기술에 의해 고급 산업용 다이어몬드를 생산하여 왔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일진은 GE사가 막대한 비용을 들여 20년 걸려 개발한 동기술을 불과 2년만에 갖게 되었다는 점을 들어 1989년 10월 미국 보스턴 연방법원에 제소하였고 동 법원은 1994년 1월 5일 이를 이유있다고 받아들여 일진에게 「7년간 산업용 다이어몬드의

생산금지와 함께 일진이 GE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기 위하여 설비 한 산업용 다이어몬드 제조장비의 파괴 또는 GE사에 반납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다. 우리는 이 판결에서 다음과 같은 몇가지의 아쉬웠던 점을 앞으로의 분쟁해결의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첫째, GE사가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한 산업용 다이어몬드 제조방법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인가를 먼저 점검해 보아야 한다. 미국 연방특허법원은 그 발명이 신규성, 산업의 이용성, 진보성 등의 특허요건을 갖추고 있을 때에는 그 발명의 성과를 일반공중에게 널리 공개하여 중복연구를 피하고 보다 낳은 발명을 유도하여 국가산업의 발전을 피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과 부합되지 않은 각 주의 영업비밀보호법에 의해 침해제소를 당했을 경우 법원이 특허요건을 갖춘 발명에 대한 쟁 영업비밀보호법의 적용을 배제시켜 그 발명과 관련된 업계 뿐만 아니라 일반도 접근 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퇴직자 「성첸민」씨와 GE사 간에는 어떠한 형태로든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경영금지계약 등이 체결되어 있어야 하고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중심으로 점검해 보아야 한다.

① 그 계약의 내용에 비밀로 지켜야 할 영업비밀이 무엇인지 구

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어야 하고 만약 보호대상인 영업비밀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고 막연하게 기술되어 있을 때에는 영업비밀 보호차원을 넘어 부당하게 직업선택의 자유 및 노동인구의 유동성을 제한할 우려와 독과점의 사회적 폐해 등을 들어 법원이 계약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② 퇴직자의 전직제한 등 경업금지를 가하는 직종 및 지역적 범위와 그 기간은 합리적으로 정해져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③ 퇴직자의 입장에서 생계유지를 위한 합법적인 노력을 방해한다는 점에서 과도한 제한이 아니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경업금지라고 하는 경제활동의 제한조치라는 점에서 금지기간 동안의 제약에 대한 보상적 성격과 동기간 내의 비밀유지에 대한 대가적 성격의 유효한대가 예를들면 명예수당이나 기말수당

등의 지불을 명시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한다.

셋째, 일진의 생산활동 금지기간 7년이 합리적으로 설정된 기간 인지를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중심으로 점검해 보아야 한다.

① 생산활동 등의 금지기간은 일진으로 하여금 산업용 다이어몬드 제조기술을 정당한 수단에 의해서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취득하거나 상품을 분해하여 내재되어 있는 정보를 추출하여 제품화하는데 소요되는 복제공법기간 또는 일진이 GE사의 영업비밀을 가지고 경쟁상의 우위를 지킬 수 있는 선도기간 (leading period)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될 것인가 등을 명백하고도 확실한 증거에 의해서 증명할 기회를 주고난 후에 처분의 범위로 그 기간을 한정했어야 한다는 점이다.

② GE사 등에 의한 산업용 다이어몬드의 독과점 생산이 산업에 끼치는 폐해 등을 고려했어야 한

다는 점 등이다.

이외에도 영미법 국가의 사법제도에서는 소송절차 초기에는 법원의 직접 개입없이 당사자의 자유로운 증거조사 절차를 수행하는 디스커버리 (Discovery) 절차가 상당기간 진행된다. 이 단계에서 유리한 증거의 확보여부가 재판의 승패를 좌우하게 되므로 디스커버리를 마친 사건은 거의 90%정도가 공판 개시전 화해에 의하여 해결되고 있는 실정이다.

나머지 10%정도가 재판에 의해서 해결되는데 제일 먼저 배심원을 선정하게 된다. 배심원은 법원 소재지의 평범한 시민중에서 선정한다. 선정된 배심원이 원고나 피고 어느쪽 편견이나 이해관계가 있을 때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특히 외국인의 경우는 이를 잘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Multimedia 기술동향 세미나 개최

### 1. 목적

- 산·학 협동을 통한 기술개발선도, 산업발전에 기여
- 최신기술 및 시장정보 교환으로 신제품 개발을 촉진
- 산·학협동 활성화 등

### 2. 공동주최

- 한국전자공업진흥회/대한전자공학회

### 3. 주제

- 학계
  - 정보통신기술동향
  - 멀티미디어 기술동향
  - 소프트웨어 기술동향

### 4. 일시/장소

- '95. 5. 25(목) 13:00~18:00  
부산무역전시관(국제회의실)

### 5. 문의처 : 본회 기획과(Tel : 563-7377)